



2025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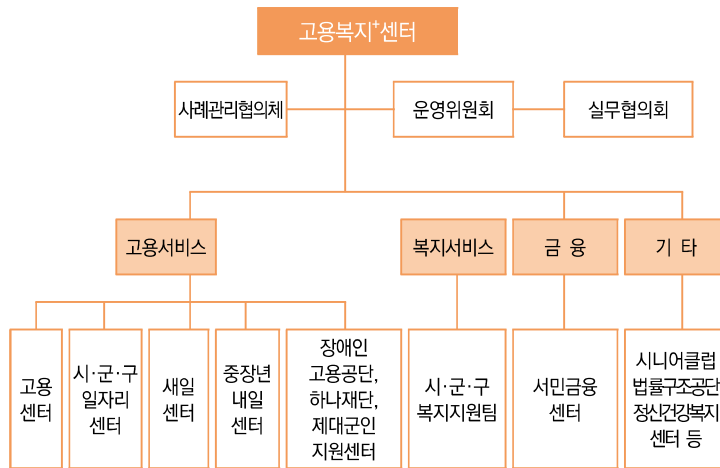
통

## 54 고용복지+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www.workplus.go.kr)

### 사업 개요

- (목적)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및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
- (업무 체계도) 각 기관의 조직·인사·예산 등의 독립성을 유지한 협의체로, 공간 등 하드웨어 통합을 바탕으로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연계·통합



### 주요 제공 서비스

서비스 분류	참여기관	주요 서비스	
고용 서비스	종합 서비스	고용센터	실직자 구직급여 및 재취업 지원, 구인·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안정 사업 등 종합 고용 서비스 제공
	지역맞춤형 서비스	시·군·구 일자리센터	지역별 구직자 취업지원 및 일자리 발굴, 채용행사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별 특화 서비스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과 직업교육 훈련, 인턴십 연계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중장년 내일센터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 설계 지원,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의 종합 전직서비스 제공
		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제공
		하나재단	취업지원 및 직업역량강화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제대군인 지원센터	중·장기 복무(5년 이상) 제대(예정) 군인에게 진로상담, 취·창업 지원 등을 통해 사회 안착 지원	
복지서비스	시·군·구 복지공무원	사회 복지 서비스 상담·신청·접수, 공공·민간 복지 자원 연계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혜택 등 상담·제공	
서민금융지원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서민, 영세 상공인, 저신용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서민층 저리자금, 신용회복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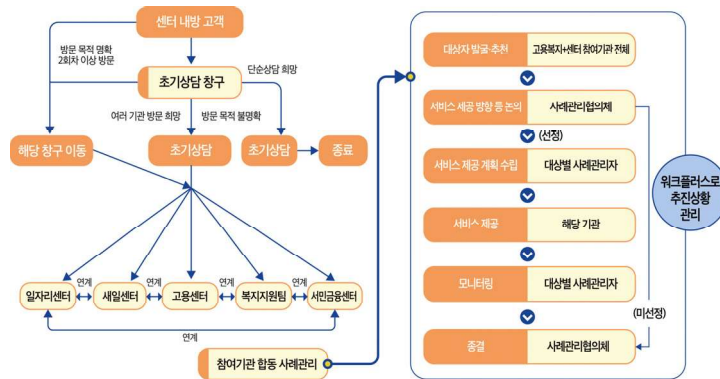
### 운영 방향

- (통합 서비스) 한 공간에서 다양한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방문자의 편의 도모
- (원스톱)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필요·적합한 고용·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 획득, 서비스 상담·신청·수령 가능
- (서비스 연계) 취업에 복합적인 애로가 있는 구직자는 적합한 기관과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를 가진 구직자는 사례관리 대상으로 추천·관리하여 취업을 통한 자립 지원

- (서비스 연계 시스템\_워크플러스) 고용복지+센터와 협업하고 있는 유관기관 간 서비스 의뢰·연계·공유 등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 활용

### 서비스 프로세스

- (협업) 참여기관 간 협업 및 역할분담을 통해 인력 및 예산을 효율적 운영
  - 각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
- (프로세스)



## 55 ▶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 사업개요

- 구직자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에서는 원하는 인재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명	사업내용
구직자-일자리 1:1 매칭	구인 또는 구직신청을 받아 구인자 또는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 또는 일직리를 탐색하여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알선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고용센터 등의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 현장면접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동행면접	일 경험이나 면접경험, 자신감 부족 등으로 채용면접을 어려워하는 구직자와 함께 기업을 방문하여 안정적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지원
채용대행서비스	근로자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이 절감되도록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채용 심사서류의 접수와 기초심사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

- 48개 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 수요데이'를 개최하여 현장채용행사와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센터의 서비스를 집중 지원

### 신청방법

- (오프라인)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자는 구직신청서를, 구인기업은 구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고용노동부 고용24(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개인회원(구직자) 및 기업회원(기업)으로 로그인한 후 구직신청 또는 구인신청 등록

## 56 ▶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 사업개요

- 인구·산업구조 변화, 취업·채용 형태 다양화, 일에 대한 인식 변화, 온라인·디지털 서비스 확산 등 고용서비스 여건 변화에 대응 필요  
 ⇒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급여 지원 →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고, 약자 안전망 강화, 빈일자리 해소 등을 위해 **맞춤형 취업·채용 지원 강화**

### 서비스 내용

- (구직자) ①**잡케어(Job Care)** 기반 개인별 직무역량 및 노동시장 정보 분석 제공, ②**1:1 심층 상담**을 통한 경력개발 로드맵 설계, ③**경력설계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프로그램 제공** 등
- (기업) ①**일자리 특성, 구인 직종 및 임금·복지 수준 등을 고려한 기업 유형 분류**, ②**기업 유형에 맞는 인사·노무 컨설팅, 인프라·환경 개선, 인지도 제고 등 지원 정책 맞춤 연계\***

\* 고용부 및 관계부처와의 연계·협업을 통한 종합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구직자) 실업급여 수급자, 직업지도 및 경력설계가 필요한 청년층 구직자 등
- (기업) 근로조건, 작업환경 등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컨설팅이 필요한 구인애로기업 등

지원예시

- ❖ (구직자) 청년구직자 자립을 위한 밀착상담과 복합서비스 제공으로 탈수립 성공
  - (고용) 잡케어 활용 시장분석, 물류 무역사무원 훈련 지원, -(복지) LH청년 주택 보증금, 어린이재단 공부방 지원, -(금융)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서민금융진흥원(햇살론유스), 청년 기쁨두배통장 연계 지원
- ❖ (기업) 청년구인의 어려움을 인지도 제고와 '맞춤형 정책연계'로 해결
  - (맞춤형 정책연계) 인지도 제고를 위한 기업홍보서비스, 자치단체 경영혁신컨설팅으로 인사 규정 정비, 고용촉진지원금 등으로 고용여건 향상
  - (일자리창출) 고용센터 일자리수요데이 참여로 청년인재 3명, 일경험 사업 청년인턴 2명 채용

## 신청 및 문의

### • (구직자)

센터명	전화번호	센터명	전화번호	센터명	전화번호
서울	02-2004-7861~3	평택	031-646-1059	포항	054-280-3016-7
서울강남	02-3468-4840	춘천	033-250-1912	구미	054-440-3396
서울동부	02-2142-8585	강릉	033-610-1936	영주	054-639-1148
서울서부	02-2077-6080	원주	033-769-0973	안동	054-851-8056
서울남부	02-2639-2457	태백	033-550-8651	광주	062-609-8761
서울북부	02-2171-1725	영월	033-371-6256/6268	전주	063-270-9252
서울관악	02-3282-9240	부산	051-860-2058	익산	063-840-6528
인천	032-460-4714	부산동부	051-760-7116	군산	063-450-0689
인천북부	032-540-5815	부산북부	051-330-9816	목포	061-280-0522
부천	032-320-8916	창원	055-239-3514	순천	061-720-9199
의정부	031-828-0930	울산	052-228-1972	대전	042-480-3993
고양	031-920-3914	김해	055-330-9527	청주	043-230-6705
수원	031-231-7917	진주	055-760-6707	천안	041-620-7401
성남	031-739-4949	통영	055-650-1815	충주	043-850-4008
안양	031-463-3808	대구	053-667-6089	보령	041-930-6231
안산	031-412-6922	대구서부	053-605-6538	서산	041-661-5612

### • (기업)

센터명	전화번호	센터명	전화번호	센터명	전화번호
서울	02-2004-7883	평택	031-646-1294	포항	054-280-3013
서울강남	02-3468-4815	춘천	033-250-1915	구미	054-440-3317
서울동부	02-2142-8503	강릉	033-610-1941	영주	054-639-1142
서울서부	02-2077-3326	원주	033-769-0906	안동	054-851-8052
서울남부	02-2639-2400	태백	033-550-8644	광주	062-609-8736~9
서울북부	02-2171-1770	영월	033-371-6253	전주	063-270-9140
서울관악	02-3282-9214	부산	051-860-2135	익산	063-840-6573
인천	032-460-4830	부산동부	051-760-7287	군산	063-450-0629
인천북부	032-540-5818	부산북부	051-330-9893	목포	061-280-0539
부천	032-320-8992	창원	055-239-0945	순천	061-720-9126
의정부	031-828-0926~7	울산	052-228-1952	대전	042-480-3949
고양	031-920-3932	김해	055-760-6787	청주	043-230-6763
수원	031-231-7909~11	진주	055-760-6706	천안	041-620-7485
성남	031-739-3109,3115	통영	055-650-1855	충주	043-850-4024
안양	031-463-0745	대구	053-667-6125	보령	041-930-6291
안산	031-412-6925	대구서부	053-605-6476	서산	041-661-5617

## 57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 ■ 사업개요

- 구직·실직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가능성 제고



###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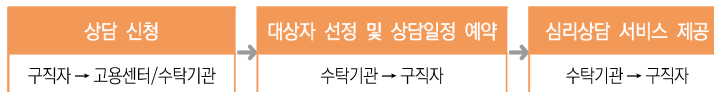
-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등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로서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서비스 제공

우선 지원 대상	① 최근 2년 이내에 갑작스러운 생활 여건 상의 변화를 겪으면서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 ② 실직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불안 증세 등을 보여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신 분 ③ 구직자 스스로 상담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고용센터 담당자가 심리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	---

###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 지원절차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은 전문상담기관에 위탁하여 서비스 제공

## 58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 사업개요

- 구직자의 직업선택, 경력설계, 구직기술 향상, 직업정보 제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 운영

### 서비스 종류 및 내용

- (집단상담) 15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을 구성하여 취업의욕 고취, 구직기술 향상 등을 2~4일 간 집중 지원하는 실습·체험식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내용
성취프로그램	성인 구직자	· 구직기술 향상을 통해 자신감 회복 지원 · 취업정보수집, 지원서류 작성, 모의면접 등
[Hi+] 고졸청년층 취업지원프로그램	고교 2~3학년	· 카드, 보드게임, 온라인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경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참여형 활동 강화 · 경력·직장·취업역량·구직준비 이해, 채용서류·면접 준비 실전, 경력개발계획수립 등
[CAP@] 청년층직업지도 프로그램	18~34세 청년	· 직업선택부터 구직활동까지 종합 지원 · 자기탐색, 기업탐색, 서류작성, 모의면접 등
[청년취업GYM]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모듈 프로그램	18~34세 청년	· 참여자 특성별 모듈(총 16개) 조합·운영 · 취업동기 부여, 정보탐색, 취업클리닉, 적응력 향상 등 종합 지원
취업희망 프로그램	심리적 취약계층	· 참여자의 자존감 회복과 구직의욕 향상 지원 · 일·직업가치·나의강점·채용트렌드 이해, 대인관계향상 지원, 희망실현 계획서 작성 등
[4U] 40대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40대 구직자	· 진로전환과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심리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의지를 높이며 구직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
[신호탄] 신중년 재취업설계프로그램	50~60代	· 퇴직자, 이전직 준비자 등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노동 시장 이해와 경력 전환기의 재취업 활동 지원

- (소그룹 취업컨설팅) 5~10명의 소그룹을 구성하여 구직의욕 고취 또는 취업 역량 강화를 2~4일간 집중 컨설팅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 상	내 용
청년취업 ON	18~34세 청년	• 3개 직무군별(경영사무/영업마케팅/IT) 주요 역량 이해와 관련된 개인 경험 연계 중심 구직기술 강화 지원
내일또다시	성인 구직자	• 기계설치·정비·생산직, 사회복지·돌봄직 분야 재취업지원을 위한 정보탐색역량 강화 지원
마음톡톡 심플	심리적 취약계층	• 생애 진로 스토리 점검하기, 취업 방해 요인 탐색 등을 통해 구직의욕 향상 지원
조선업 취업컨설팅 프로그램	조선업 취업 희망자	• 직업전환 고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인식개선과 산업·직무 이해를 통해 직업 선택 폭 확대
반도체 취업컨설팅 프로그램	반도체 취업 희망자	•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도체산업 분야 진출을 돕고, 취업 후 고용유지 지원

- (단기프로그램) 구직 스트레스 관리,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요령 등에 관한 정보를 2~3시간 동안 집중 제공하는 프로그램

구분	시간	내용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각 3시간	• 구직 스트레스 다루기, 청년(마음의 힘 기르기, 나를 이해하기, 비즈니스 매너), 신중년(잘 살아온 내 인생 앞으로는, 나를 이해하기, 직장 내 행복한 대화 이끌기) 등 총 7종
취업특강 프로그램	각 2시간	•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요령, 직업심리검사와 직업 선택, 근로기준법, 성공하는 취업정보수집 등 8종

## ■ 신청방법

- (오프라인)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온라인)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하여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별 운영일자와 고용센터를 선택하여 참여 신청

## 59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 사업목적

-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 ■ 지원대상(수급자격 요건)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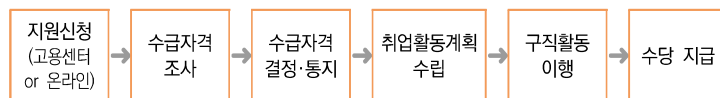
필요요건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경험	
I 유 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	4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15~34세 + 병역의무 이행기간 (최대3년)	중위소득 120% ↓	5억원 이하	무관	
II 유 형	특정계층	15~69세	무관			
	청년	15~34세 + 병역의무 이행기간 (최대3년)	무관	무관	무관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소득 지원
I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6개월 *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li> <li>•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li> </ul>
II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등 연계</li> <li>•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월28.4만원×6개월) 등</li> <li>•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및 특정계층)</li> <li>•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수당】 추가 훈련수당 (월 최대 20만원 × 6개월) 및 취업성공수당(40만원) - II유형 청년이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근속시 지급</li> </ul>

###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 지원 장려금

---

통

## 60 ▶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고용24(www.work24.go.kr)

### ■ 사업목적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
    -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구분	1년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 기업	720만원	360만원
중견기업 <sup>1</sup>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 기업	360만원	18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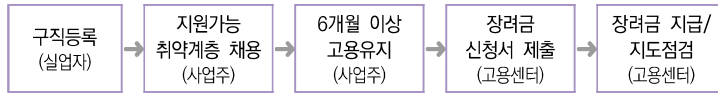
\* '25. 1. 1. 이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상 유효기간 내 채용된 근로자부터 적용

\*\*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이면서 동시에 고용보험법상 대규모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 지원금액으로 지급

- 지원한도: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 ①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 ②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법무부)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형훈련)」 (고용노동부)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8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9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고용노동부)
10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노동부)
11	지방관서별 자체 선정·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고용노동부)
12	청년도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 ■ 사업추진체계



## 61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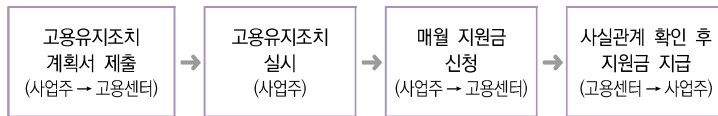
-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사업주의 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

###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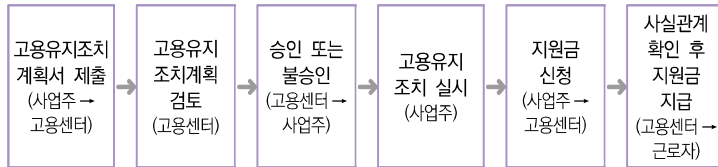
- 지원대상
  - 매출액 감소 등 일시적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휴업(평균임금 50%미만 수당 지급 포함)을 실시한 근로자
- 지원내용
  -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지원 →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휴직)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지원 →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수준을 결정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실제 수령한 금품 등 고려하여 지원
- 지원수준
  - (1일 상한액) 6.6만원
  - (지원기간) 휴업·휴직은 합하여 연간 180일  
무급휴업·휴직은 재직기간 중 총 180일

### ■ 사업추진체계

- 휴업·휴직



- 무급 휴업·휴직



\* 무급휴업은 노동위원회 승인(평균임금의 50% 미만 또는 미지급 등), 무급휴직은 근로자대표와 합의와 이전 1년간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의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이력 등을 토대로 사전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필요

## 62 ▶ 고용안정장려금(총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고용24(www.work24.go.kr)

### ■ 사업목적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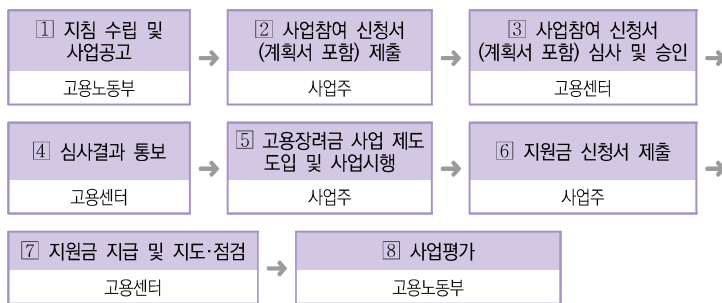
### ■ 사업내용

지원 유형	지원요건	지원수준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가 필요할 때(가족돌봄, 본인 건강, 임신 등)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li> <li>▪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20만원</li> <li>※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li> <li>※ 지원인원 한도: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li> </ul>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①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고용센터 참여신청서 제출 및 사업 승인 ③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④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려금]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li> <li>▪ [지원인원]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li> <li>▪ [지원대상 근로자] 사업 참여 직전달 말일 기준 재직 피보험자로서, 단축 시행 해당월 종료일까지 피보험자격 유지중인 자</li> <li>※ (지원 한도)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 지원</li> </ul>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①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등의 유연근무제 활용 ② 유연근무 도입·활용 또는 근무 혁신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육아기는 2배, 시차는 월 최대 40만원)</li> <li>▪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스템 구축비 최대 2천만원 지원(유연근무 유형은 최대 750만원 지원)</li> </ul>

☞ 사업주 지원 장려금 - ②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장려금

지원 유형	지원요건	지원수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b>육아휴직 지원금</b>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장려금]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허용시 월 200만원 지원(첫3개월)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 육아휴직 1~3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지원
	<b>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b>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장려금] 월 30만원 *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b>대체인력 지원</b>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파견사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대체인력인건비] 월120만원(업무 인수 인계기간 동일) * 사업주가 대체인력에 대해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에 80% 지급
	<b>업무분담지원금</b>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이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장려금] 월 20만원 * 육아휴직 등 사용근로자 1명당 업무 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분담수당은 합산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추진체계



\* 위라벨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②~④ 생략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63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고용24(www.work24.go.kr)

###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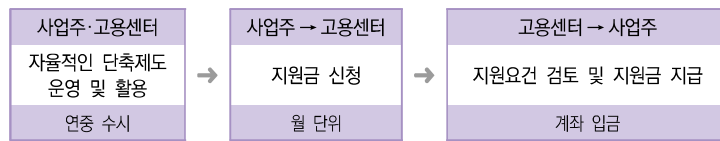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임신 등)에 따라 일정 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일반적 사유 근로시간 단축> ①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② 6개월 이상 근속 ③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 신청으로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④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⑤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①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 신청으로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② 연장근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li> <li>▪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20만원</li> </ul>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별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 지원인원 한도: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소수점이하 버림, 10명 미만인 경우 3명)

- 지원 제외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 사업추진체계



## 64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고용24(www.work24.go.kr)

### ■ 사업목적

-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에 기여

###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사업주 ①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고용센터 참여신청서 제출 및 사업 승인 ③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④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감소 * (단축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후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액]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li> <li>▪ [지원인원]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 (지원 한도)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 지원</li> <li>▪ [지원대상 근로자] 사업 참여 직전달 말일 기준 재직 피보험자로서, 단축 시행 해당월 종료일까지 피보험자격 유지중인 자</li> <li>▪ [신청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기한)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li> <li>- (지원기간, 주기) 최대 1년, 3개월 단위</li> </ul> </li> <li>▪ [Tip] 근로자 각각의 실근로시간을 모두 2시간 이상 단축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일감나누기(work-sharing) 등을 통해 기업의 평균 근로시간을 줄여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li> </ul>

### ■ 지원 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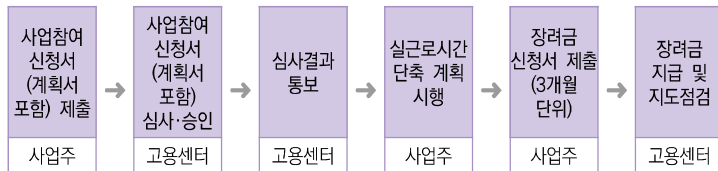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 제외
  - 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㉔ 일반·무도유휴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 해당 사업주
- ㉕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 ㉖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㉗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사업장)에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사업장)
- ㉘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였거나, 주 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 지원 대상 근로자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 제외
    - 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㉒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 근로자
    - ㉓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 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 ㉔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 ㉕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사업추진체계



## 65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고용24(www.work24.go.kr)

### ■ 사업목적

- 유연근무를 도입·활용하거나 일·생활균형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 ■ 사업내용

-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유연근무를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선택근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방식
원격근무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 (지원수준) 활용근로자당 1년간 최대 360만원의 장려금 지원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15만원 (월 4일~7일 활용)	20만원 (월 8일~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재택·원격근무				360만원 (1년간)
시차출퇴근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해당)		20만원 (월 6일~11일 활용)	4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480만원 (1년간)
선택근무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 (1년간)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소수점 이하 버림,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지원대상) 유연근무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거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혜택을 제공(우수기업 명단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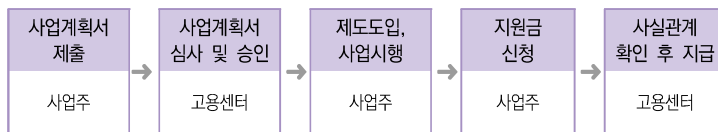
〈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 〉

종류	지원시스템 예시	지원방식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태관리 시스템</li> <li>-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인사·노무관리 프로그램, 클라우드 방식의 근태관리, 출퇴근 기록 장비 등)</li> </ul>	직접지원 (설치비 또는 사용료)
재택·원격 근무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시스템</li> <li>-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li> </ul>	

※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근태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 (재택·원격), 80%(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천만원 한도(재택·원격)
  - ※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근로시간 단축 등): 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용의 70%, 750만원 한도

■ 사업추진체계



[참고1]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우수기업을 관계 부처·경제단체 합동으로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 고용부(총괄)·산업부·중기부·경총·대한상의·중기중앙회 공동 선정('24년-), 노사발전재단 위탁 수행

- (신청대상)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일·생활 균형 제도가 우수한 사업장
- (평가항목) 유연근무, 근로시간, 연차휴가, 일·육아병행,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성·정량적으로 평가
- (선정혜택)
  - ① (조사·감독 면제) 국세·관세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 ② (정부지원사업 우대) 일·생활균형 인프라 지원 우대,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시 우대, 해외지사화 사업 참여시 우대 등
  - ③ (금융상 우대)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대출금리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 ④ (기타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고용24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테마관 운영, 우수기업 선정서·선정패 시상 및 마크 부여
- (선정절차) 사업공고·접수(3월) → 1차 심사(7월) → 현장실사 → 2차 심사(11월) → 우수기업 선정공고 및 시상(11월말)
-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 온라인 신청
  - \* 사업소개 > 일터혁신 및 일·생활균형 지원 >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

[참고2] 일·생활 균형 캠페인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는 캠페인

- (참여대상) 일·생활 균형 핵심 3분야·기본과제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

핵심 3분야	실천 내용
오래 일하지 않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시퇴근하기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실천하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카톡 자제, 퇴근 직전 업무지시 자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집중도 향상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자제, 집중근무시간 활성화 등)</li> </ul>
똑똑하게 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똑똑한 회의·보고 (꼭 필요한 회의만 효율적으로, 회의일정·안건 사전 공유, 메모·구두 영상보고 활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명확한 업무지시 (무엇을·왜·언제까지·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구체적 방향 제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연한 근무 (업무 질과 성과로 평가, 시차출퇴근, 원격·재택근무, 시간선택제 등)</li> </ul>
제대로 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가사용 활성화 (연가사유 묻지 않기,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한 회식문화 (회식에 대한 인식 바꾸기, 회식일정 사전공유, 문화회식 활성화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 권리 지켜주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유로운 사용 분위기 조성, 여가 생활 지원 등)</li> </ul>

## 66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용24(www.work24.go.kr)

### ■ 사업목적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한 사업주 부담 경감을 통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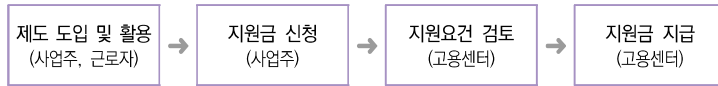
### ■ 사업내용

구 분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li> <li>※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기간: 육아휴직기간</li> <li>•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li> <li>*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허용시 월 200만원 지원(첫3개월)</li> <li>*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 육아휴직 1~3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지원</li> </ul>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li> <li>※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li> <li>•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li> <li>*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li> </ul>
대체인력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li> <li>①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또는 파견사용</li> <li>②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휴가 등의 시작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기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사용)한 기간</li> <li>• 지원금액: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원</li> <li>※ 사업주가 대체근로에 대해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에 80% 한도로 지원</li> </ul>

사업주 지원 장려금 - ②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장려금

구분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내용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 또는 사용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사용) 후 1년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업무분담 지원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이상)을 30일 이상 허용 ②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하여 매월 업무 분담수당 등 금전적 지원	• 지원기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지원금액: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 육아휴직 등 사용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분담수당은 합산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67 사회적기업 육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0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 ■ 사업목적

-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판로지원·성장지원 등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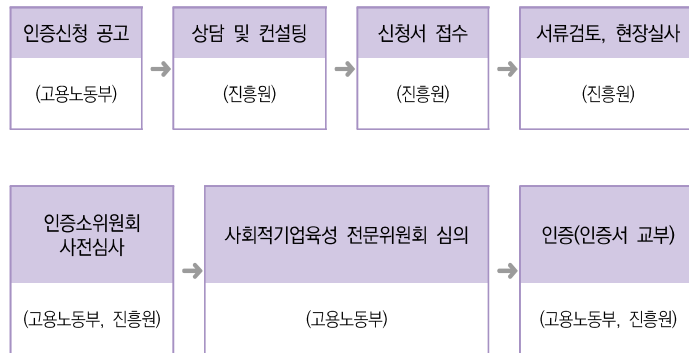
### ■ 사업내용

- 인증요건 및 절차
  - (요건) ▲ 조직형태(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등) ▲ 유급근로자 고용 ▲ 사회적목적 실현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정관 규정 ▲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의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동일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 영업활동 수행	영업활동 수행
③ 사회적목적 실현 (30% 이상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해당사항 없음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상법상 회사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동일

-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은 지자체 및 각 부처에서 진행

〈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광역자치단체 (지정계획 수립 등)	각 부처 (지정계획 수립 등)
광역자치단체 (지정 공고)	각 부처 (지정 공고)
기초자치단체 (신청접수, 관리)	진흥원 (신청접수 등 지정심사 업무 지원)
광역자치단체 (심사 및 지정)	각 부처 (심사 및 지정)

• 지원내용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경영 지원	유망 기업 스텝업	시장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단계별(디딤돌 → 도약 → 성숙기) 맞춤형 지원 * (디딤돌) 초기 경영지원(인사·노무·회계 등), (도약) 사업화·전문화 지원(R&D·판로·마케팅 등) (성숙기) 규모화 지원 및 공공·민간 상생모델 구축	○	○
	모태 펀드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계정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	○	○
	시설비 등 지원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 (미소금융 예비포함)	○
판로 지원	온· 오프라인 매장 운영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을 위한 e-store36.5 입점 지원, 홈쇼핑 연계 및 온라인물 기획전 운영, 전국 스토어 36.5 매장 입점 지원(85개소)	○	○
	소셜 벤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회적기업 상품 발굴·개선부터 유통채널 입점까지 유형에 따라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	○
	지역특화 스타상품	지역 대학·자치단체·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 특화 상품(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 스타 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 프로모션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후속 판로지원	-	○
	맞춤형 마케팅 지원단	사회적기업 마케팅 역량 제고를 위한 기업별 마케팅 교육·코칭, SNS 개설 및 운영 등 사회적기업의 특색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 전략 지원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 권고 * (대상)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24년 850개소)	-	○
세제 지원	사회적기업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 50% 감면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	

\* 지원내용(지원 기업수, 금액)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68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9),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www.reis.or.kr)

###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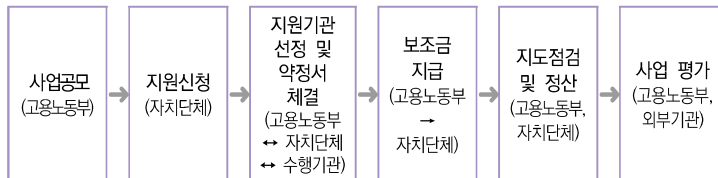
- 자치단체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의 수립,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등 일자리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 지원대상 : 광역자치단체

### ■ 사업내용

- 지역혁신프로젝트
  - 지역의 핵심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지역의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등 지원(광역자치단체)
-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 자치단체가 중앙 일자리사업의 지원요건을 완화 또는 지원수준을 상향하는 등 중앙 일자리사업과 연계·우대(PLUS)하여 고용상황이나 인력수요 등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광역자치단체)
-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 주력산업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패키지 지원」 운영 지원(광역자치단체)

### ■ 사업추진체계



## 69 ▶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8,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고용24(www.work24.go.kr))

### ■ 사업목적

-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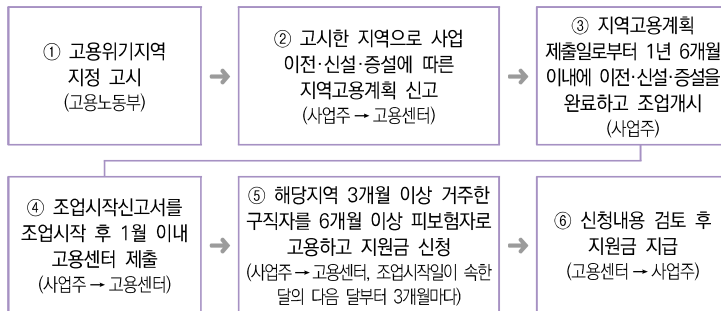
### ■ 사업내용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지정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1/2(대규모기업은 1/3)을 최대 1년간 지원\*\*

\* 이전·신설·증설은 원칙적으로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을 때에 인정

\*\* 지원 상한액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1일 상한액은 6.6만원)

### ■ 추진체계



## 70 ▶ 지역일자리 공시제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8),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 홈페이지(www.rei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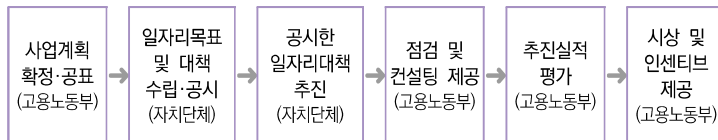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수립하여 공표
  -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일자리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우수자치단체에 인센티브 등 제공

### ■ 사업내용

- (공시주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공시내용)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
  - \*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연계하여 종합계획(4년) 및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
- (공시방법) 자치단체는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지역 언론, 기관 홈페이지, 주민 대상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공시
  - \* 공시한 자료는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www.reis.or.kr)에도 게시하여 공유
- (평가 및 인센티브) 자치단체의 연차별 공시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 인센티브\* 제공 및 우수사례 확산
  - \* 정부시상, 담당공무원 표창, 지역일자리사업 사업비 지원 등

### ■ 사업추진체계



## 71 ▶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 사업목적

-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 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 고용활성화 도모

### ■ 지정기준

유형	요건
1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호~제4호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피보험자수와 해당 기간 전 1년간 피보험자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 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li> <li>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li> <li>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p>*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폐업·도산 및 경영상 필요·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말함</p> </li> <li>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사업장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의 사업장 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li> </ol> </li> </ul>
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유형의 제1호~제3호 중 일부만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다음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증감률, 지역의 고용률 등 고용지표</li> <li>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대비 상실자 수 비율 등 실업지표</li> <li>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증감률 등 사업장 변경</li> <li>지역 주력산업의 경기실사지수, 생산·판매여건 변화, 고용규모 증감, 체불임금액 현황 등 산업구조 변화</li> <li>인구 순이동률 등 인구구조 변화</li> </ol> </li> </ul>
3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역의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li> </ul>

### ■ 지정절차

- 자치단체 신청 → 현지조사 등 지정 필요성 검토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 ■ 지정기간

- 최초 최대 2년, 1년의 범위내 3회 연장 가능(최대 5년)

### ■ 지원내용

-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수준 확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포함),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
-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에 대해 특별연장급여 지급(고용정책심의회 의결 필요)
- 실업자 심리상담 및 재취업 지원, 전직 및 창업지원, 그 밖에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 72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 사업목적

-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생활안정 등을 지원

### ■ 지정기준:

- ① 다음 4개 기준 중 3개 이상 충족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 〈 요건① 충족기준 〉

- ㉓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이 같은 기간 모든 업종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 ㉔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
  - ㉕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폐업·도산 및 경영상 필요·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말함
  - ㉖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사업장 수가 해당기간 전 1년간의 평균 사업장 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
- 
- ② 위 4가지 기준 중 2개 이하로 충족할 경우, 한국은행 기업실사지수, 해당 업종 주요 기업 재무상황 및 신용위험도, 산업생산지수, 해당 업종 휴폐 업체 수 및 피보험자격 상실자 수, 일용근로 신고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 ③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전환 또는 폐업 등으로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 시되는 경우 해당 업종의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정절차

- 업종별 단체 등이 신청 → 현장실사 등 지정 필요성 검토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 지정기간

- 최초 최대 2년, 1년의 범위내 3회 연장 가능(최대 5년)

### 지원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급여,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 73 ▶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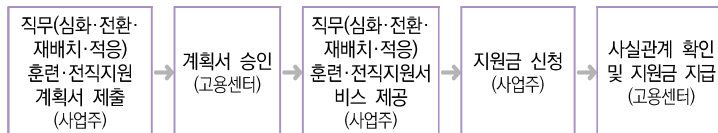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자체 또는 위탁하여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을 위한 훈련 및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지원

### ■ 사업 내용('25년 기준)

- 지원 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 최근 3년 이내 사업 이내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산업·일자리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업체, 석탄, 철강,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일자리 변동 업종 기업 등
- 지원 요건: ①<공통> 최소 1개월 이상 또는 최소 20시간 이상 훈련, ②<사업주 훈련장려금> 1일 4시간 이상 집체훈련 실시
  - \* 대규모 기업은 훈련 실시에 대한 노·사협의 필요, 최소 1개월 이상 교육 지원
- 지원 내용: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을 위한 훈련 및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훈련비 및 사업주 훈련장려금 지원
  - \* 단, 전직지원 의무 있는 1,000인 이상 기업은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비용만 지원
  - (지원금액)훈련비\* 및 사업주 훈련장려금\*\* 지원
    - \* <훈련비> 참여 근로자 1인당 300만원 내에서 훈련비(실비) 지원
    - \*\* <사업주 훈련장려금> 참여 근로자 1인당 1일 10만원(정액)을 월 200만원(총 600만원) 내에서 지원('25년 2월 중 시행 예정)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 \*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27년까지 폐지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업체는 최대 24개월 지원

### ■ 사업추진체계



## 74 고용영향평가제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397), 고용영향평가센터 홈페이지(www.kli.re.kr/e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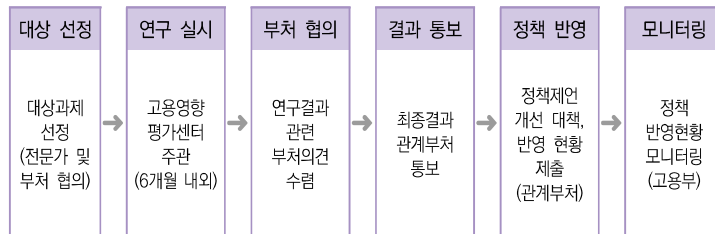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법, 제도 등의 수립·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효과를 분석하여,
  - 해당 정책 등이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 (대상) 일자리의 양·질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제도·법령·사업
- (내용) 정책 등의 고용효과 분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안 발굴
- (활용) 평가결과에 따라 각 부처에 개선권고 → 각 부처는 자발적 개선

### 사업추진체계



## 75 ▶ 고용형태공시제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30),  
워크넷 고용형태 공시제 전용 홈페이지(<http://www.work.go.kr/gongsi>)

###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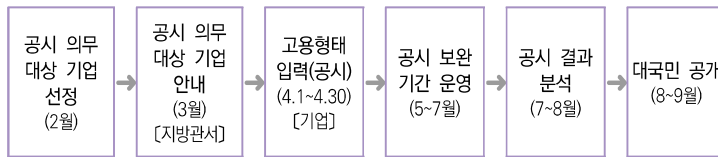
-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 기업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여론 등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
    - ※ 공공기관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고용현황 공시

### ■ 사업내용

- 공시 의무 대상
  -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공시내용
  - 소속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 〈1〉 소속 근로자: 공시의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②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기간제 근로자
    - ③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2〉 소속 외 근로자: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공시의무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간 파견, 용역, 도급 등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

- **공시방법**
  -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 기준으로 사용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워크넷에 공시
    - \* 대상 기업들이 직접 워크넷(<http://www.work.go.kr/gongsi>)에 로그인하여 입력(공시)
- **공시기간**
  - 매년 4.1.~4.30.
    - \* 워크넷에서 최근 3년 동안의 공시내용 대국민 공개

### ■ 사업추진체계



## 76 고용노동통계조사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 044-202-7244),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http://laborstat.moel.go.kr)

### 목적

- 사업체의 고용노동관련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제공함으로써 기업·국민·정부 등 통계 수요자의 고용노동관련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 \* 근거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통계법 제17조, 제1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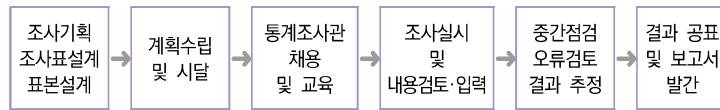
### 사업내용

#### 〈 고용노동통계조사 현황 〉

조사명	조사 기준기간	조사대상	조사 주기	조사항목
사업체노동력 조사	• (고용) 매월 마지막 영업일 • (근로실태) 매월 급여계산기간	• (고용) 종사자 1인 이상 50천개 사업체 • (근로실태) 상용 1인 이상 13천개 사업체	월 1회	• (고용) 사업체 종사자수, 입·이직 등 노동 이동, 빈 일자리수 등 • (근로실태) 임금 및 근로시간 등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조사	4월 급여계산기간	상용 1인 이상 사업체	연 1회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 등
임금체계, 정년제, 유연근무제조사	6월 마지막영업일	상용 1인 이상 사업체	연 1회	기본급 체계(호봉급, 직능급, 직무급 등), 정년제, 유연근무제 등 도입 현황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	4월 1일, 10월 1일	종사자 1인 이상 72천개 사업체	연 2회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구인·채용·미충원·부족·채용계획인원 등
지역별사업체 노동력조사	4월, 10월 마지막영업일	종사자 1인 이상 200천개 사업체	연 2회	시·군·구별 사업체 종사자수, 입·이직 등 노동이동, 빈 일자리수 등
고용형태별근로 실태조사	6월 급여 계산기간	근로자 1인 이상(특고 포함) 33천개 사업체	연 1회	정규/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및 직종에 따른 근로실태(임금, 근로시간, 보험 등)
사업체기간제 근로자현황조사	12월	근로자 5인 이상 12천개 사업체	연 1회	기간제근로자 수 및 기간제법 적용자의 계약기간 만료자 조치현황
기업체노동비용 조사	회계연도	상용 10인 이상 3.6천개 기업체	연 1회	기업체의 직·간접 노동비용 • 직접: 임금(정액급여, 상여금, 성과급 등) • 간접: 퇴직급여, 법정노동·법정의복지 비용 등
사업체노동실태 현황	12.31.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①일정한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 ②공무원 재직기관, ③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체 등을 제외하고 가공집계(사업체 및 종사자수)		

\* 이상의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체 대상 조사(가구조사 및 산하기관 조사 제외)

### ■ 사업추진체계



## 77 ▶ 인력수급전망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 044-202-7256)

### ■ 사업목적

- 향후 우리 노동시장의 인력공급 및 수요를 전망하여 국가의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 ■ 사업내용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의 수요 및 공급 전망 실시
    - \* 10년 간의 산업(소분류), 직업(세분류)별 수요 전망 실시, 성·연령별 공급전망 실시
- 단기전망
  - 산업 대분류별 연간 고용 전망
  - 주요 10개 업종\*의 반기별 일자리 전망
    - \*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금속가공, 석유화학
- 디지털 기술혁신을 반영한 인력수요 전망
  - 디지털 전환 등 기술 발전을 반영한 인력수요 전망
- 기술변화를 반영한 인력수요 전망
  - 사회·경제적 이슈를 선정하여 인력수요 전망
    - \* 예시: ① 농촌지역 고용 특성과 농업 인력수요 전망 ②디지털 기반 기술혁신과 인력수요 구조 변화 ③고령층 공급 특성 및 시나리오 분석 등
-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
  - 10개 권역 및 17개 시도별 인력수급 전망 실시

### ■ 사업추진체계





## 두터운 고용안전망 구축

---

통

## 78 고용보험제도

### 목 적

- 근로자 등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 적용범위

- (근로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 적용제외: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는 사람 등)
- (예술인)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업장
  - \* 적용제외: 65세 이후에 문화예술용역계약 한 경우,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월평균보수가 50만원 미만인 경우(다만 각 계약이 50만원 미만이나 같은 계약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 (노무제공자)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제공계약'(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업장
  - \* 적용직종: ('21.7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22.1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22.7월) 화물차주(택배 지·간선기사, 틀정품목 운송차주, 유통배송기사),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골프장캐디
  - \* 적용제외: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 한 경우, 노무제공계약의 월평균보수가 80만원 미만인 경우(다만 각 계약이 80만원 미만이나 같은 계약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 ■ 사업체계

-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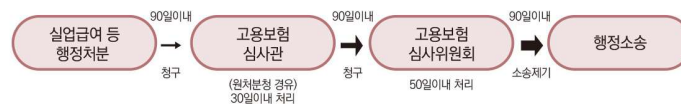
구분	내 용	보험료율(%)	부담
실업급여	근로자 실직 시 실직자와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지원	1.8	사업주 0.90 근로자 0.90
	유형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원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0.45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받는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 지원	·150인 이상·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 0.85	

- 예술인·노무제공자

구분	내 용	보험료율(%)	부담
실업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 실직 시 실직자와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지원	1.6	사업주 0.80 종사자 0.80
	유형 :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 ■ 고용보험 심사제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근로복지공단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심사처리절차



## 79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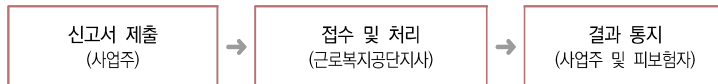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 등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 적정 운영

### ■ 사업내용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사업주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를 채용한 경우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지사에 제출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사업종료, 근로자 퇴직 및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상실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지사에 '상실신고서' 제출
  - 일용근로자의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서」를 대신하여 매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지사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 (과태료)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및 거짓 신고시 과태료 부과
  - 미신고는 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
  - 거짓신고는 1인당 5~10만원, 최대 300만원

###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80 ▶ 구직급여·연장급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 ■ 사업 목적

-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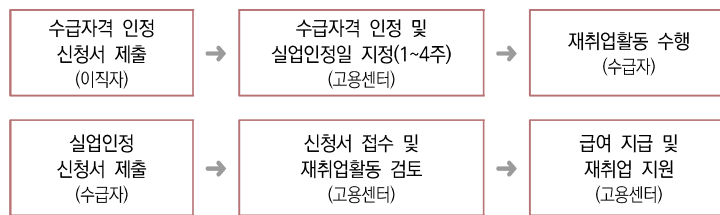
- (지원 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중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근로자
  - \*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 지원 내용
  - (구직급여)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예술인·노무 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지급)
  - \* 1일 상한액은 66,000원
  - \* 1일 하한액은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4,192원), 예술인·노무 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6,000원, 노무제공자는 26,600원)

####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연장급여) 개별연장, 훈련연장, 특별연장
  - ▶ 개별연장: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 훈련연장: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자가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에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원
  - ▶ 특별연장: 대량 실업사태 발생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발생 시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 사업 추진 체계(지원 절차)



## 81 ▶ 취업촉진수당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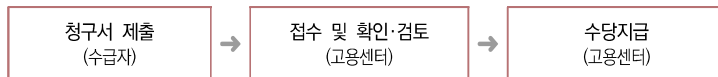
### ■ 사업 목적

-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 촉진

### ■ 사업 내용

구 분	지원 요건	지원 내용
조기재취업 수 당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 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 수급자: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잔여 소정급여의 1/2 지급
직업능력 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광역구직 활동 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때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 및 숙박료 지급
이 주 비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한 때	5톤까지 실비 5톤 초과시: 5톤까지는 실비 + 7.5톤까지는 실비의 50% 지급

### ■ 사업 추진 체계(지원 절차)



## 82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두루누리) 사업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두루누리사회보험 홈페이지([www.insurancesupport.or.kr](http://www.insurancesupport.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홈페이지(<http://www.4insur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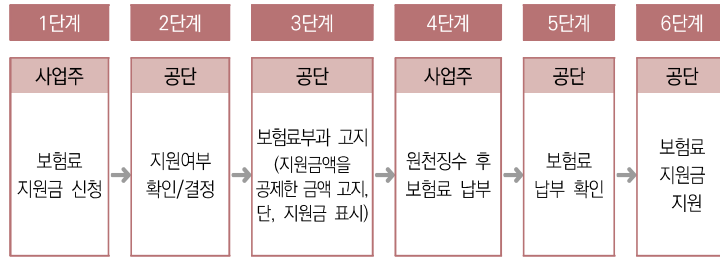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 지원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 ■ 사업내용

- (지원기준) ①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에 근로하는 월보수 270만원 미만의 근로자, ②월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① (근로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사회보험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 지원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 \*\* 월 최대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 사업주 21,160원, ▶(국민연금) 근로자 및 사업주 각각 82,800원 범위에서 지원
  - ② (예술인·노무제공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계약당사자(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 단,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지원
    - \*\* 월 최대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각각 14,720원 범위에서 지원
- (지원방식)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 다만, 특고 중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경우 개별 지원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지급

### ■ 보험료 지원 절차



## 83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 ■ 사업목적

-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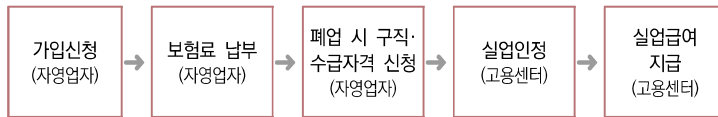
- (가입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 \*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사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고안·직능 0.25%)
- 지원요건
  - (실업급여)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의 사유로 폐업한 자영업자
    - \* (경영악화)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매출액 전년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 감소추세 등
    - (정당한 사유) 자연재해, 동거친족 간병, 질병·부상, 거소이전, 병역복무, 임신·출산 등
  - (직업능력개발훈련)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실업급여)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지급
    - \* 지급수준: 기초일액(납부한 기준보수의 합/피보험기간의 총일수)의 60%

구 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구직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가입기간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 훈련장려금 지원
  - \* (훈련비) 계좌발급일부터 5년간 300~500만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 지원
  - \* (훈련장려금) 월 최대 36만원 한도 지원  
(총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단위기간 1개월 소정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 ■ 사업 추진 체계(지원 절차)



## 84 ▶ 실업크레딧 지원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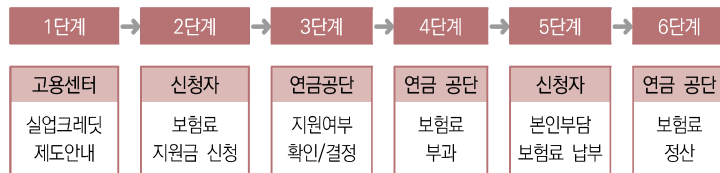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
-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
- (지원금액)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 자부담 25%
- (지원신청) 고용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85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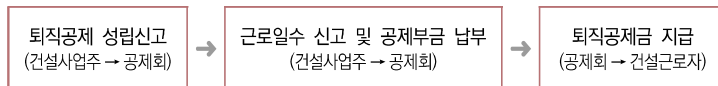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

### ■ 사업내용

- 가입대상
  - 건설공사: 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피공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근로자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1조
- (퇴직공제 성립신고)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
-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매월 15일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전월의 피공제자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 \* 신고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EDI시스템(wedi.cw.or.kr)에서 신고·납부
  - \* 퇴직공제 가입 대상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ecard.cw.or.kr)을 이용하고,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 발급·사용 의무
  - \* 공제부금 일액: 6,500원(20.5월~)
- (퇴직공제금 지급) 적립된 퇴직공제금에 이자(월 복리)를 더하여 지급
  - \* 적립일수 252일 이상: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 \* 적립일수 252일 미만: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 ■ 사업 추진 체계(지원절차)



## 86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공식홈페이지 '가사랑'(www.gasarang.go.kr)

###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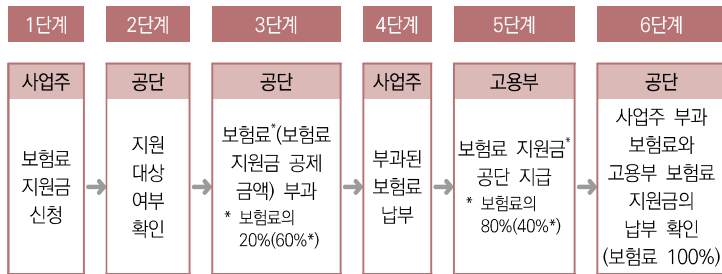
-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양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2.6.16)
- 가사근로자법 시행에 따른 가사근로자 노동권 보호,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지원 및 제도안착 등 추진

### ■ 사업내용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는 등 요건<sup>1</sup>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
    - ※ (인증요건) ▲법인 ▲가사근로자 5명을 유급으로 직접 고용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 ▲가사근로자의 고충처리 요청 수단 등
  - 인증받은 기관은 ①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②요금 및 요금산정기준, ③이용 절차 등 가사서비스 관련 정보를 일반이용자에게 공개

가사근로자 근로조건(노동관계 법령 적용)	
근로계약 체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간 임금, 최소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 체결
사회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 지급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직·질병 등의 상황에 대비
기본 근로조건 보장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되, 가사서비스의 근로장소·형태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 <sup>2</sup> 규정 * (최소 근로시간) 주 15시간 근로 보장 (휴게시간) 당사자 간 협의, 이용계약에 포함 (유급휴일·휴가)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통상근로자에 비례 적용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목적)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인 가사근로자의 고용을 촉진
  - (지원대상)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과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
    -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재산 6억원 미만,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모두 충족
    -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내용·수준) ①(10인 미만 사업장)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 및 가사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각각 80% ②(10인 이상 사업장) 가사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각각 80% 지원
  - (지원기간) 36개월
  - (지원방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지원절차)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10인 이상 사업장



---

2025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자율·창의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통

## 87 ▶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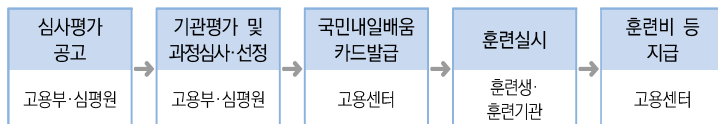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 사업내용

-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 세부훈련정보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 (지원한도)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100% 지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11.6~31.6만원 지급 (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 이상 시)
    -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부터 5년

### ■ 사업추진체계



## 88 ▶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 훈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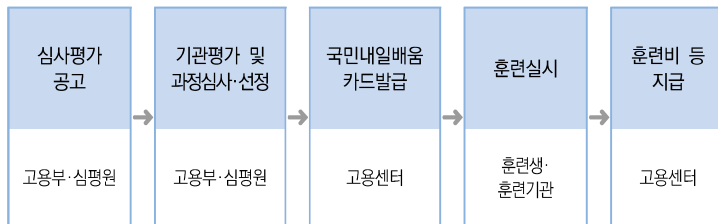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국가의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등의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 양성·공급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가능(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 \*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 지원내용
  - 훈련비 전액 (1회에 한함)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20만원 지급
    -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 사업추진체계



## 89 ▶ 돌봄서비스 훈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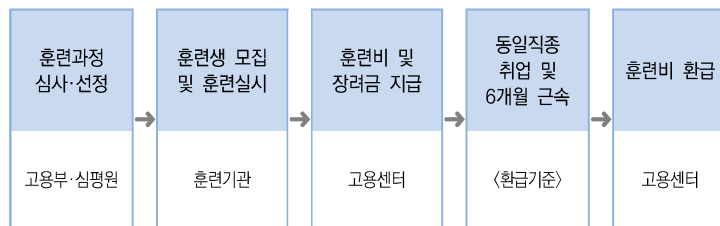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돌봄인력의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서비스 분야(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의 양성훈련 실시

### ■ 사업내용

- (훈련과정) 의료기술지원(요양보호사), 아이돌봄(아이돌보미)
-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 (지원내용)
  - 훈련비의 90%<sup>\*</sup>를 선 부담하고 훈련 수료 후 동일직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 시 선 부담한 훈련비 전액 환급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특정계층 참여자 등 취약계층은 10%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만원 지급
    -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 사업추진체계



## 90 ▶ 일반고 특화훈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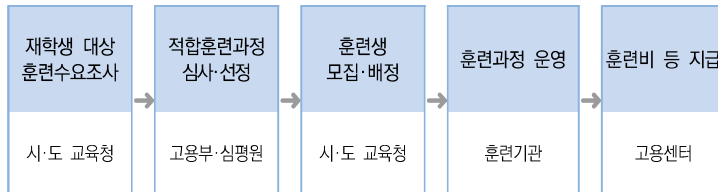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생에게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부여하여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

### ■ 사업내용

- (지원과정)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일반고 특화심사를 거쳐 선정된 훈련과정  
\* 세부 훈련정보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 (지원대상)
  - 일반계고에 재학 중인 고3학생
  - 17~19세,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확대('25년~)
- (지원내용) 훈련비 전액 및 훈련장려금 월 최대 20만원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

### ■ 사업추진체계



\* 단, 일반고 특화훈련은 사업공고 이전에 교육청을 통해 학생 수요조사 실시 → 훈련과정 선정시 반영

##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K-Digital Training)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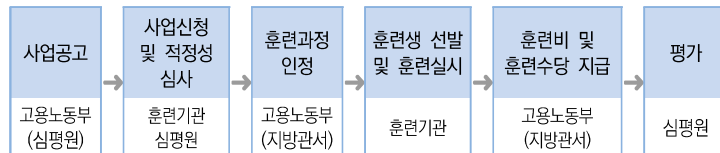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AI, 빅데이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

### ■ 사업내용

- (사업개요) K-디지털 트레이닝은, KT·삼성 등 선도기업, 민간 혁신 훈련기관, 서울대·성균관대와 같은 우수 대학 등이 훈련기관으로 참여하여
  -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사업
  - '24년부터 디지털 분야를 넘어 첨단 및 융합 분야를 포괄하는 신기술 분야 전반으로 훈련 분야를 확대·시행 중
- (훈련특징) 기업의 실제 인력수요를 훈련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선도기업이 직접 또는 훈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며, 기업의 실제 프로젝트 과제를 전체 훈련과정의 30% 이상 편성
  - 평균 6개월·주5일·일8시간의 집중적인 훈련과정으로, 경험·문제 해결 능력에 중점을 둔 훈련과정 운영 추구
-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
- (지원내용) 훈련비 전액 지원, 월 최대 31.6만원 훈련수당 추가 지원

### ■ 사업추진체계



## 92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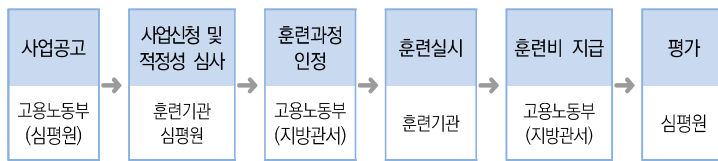
### 사업목적

- 노동시장 참여자가 디지털 역량 부족(Digital Divide)으로 노동시장 진입 및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체계 마련

### 사업내용

- (훈련내용) 빅데이터, 코딩 등 기초 디지털 영역부터 최근 등장한 메타버스 까지 다양한 신기술 분야 및 직무융합과정을 초·중급 수준으로 구성하여 민간 혁신기관 중심으로 공급
  - \* 실시간 코드 리뷰, 미니 프로젝트 수행 등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자기 주도 학습환경을 구축하여 원격 훈련이지만 집체 훈련에 준하는 과정 제공
-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
- (지원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한도(5년간 300~500만원) 외 50만원(지급 후 1년 한도)의 크레딧 추가 지급
  - \* 추가 지급된 크레딧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만 사용(훈련비 10% 자비부담)

### 사업추진체계



## 93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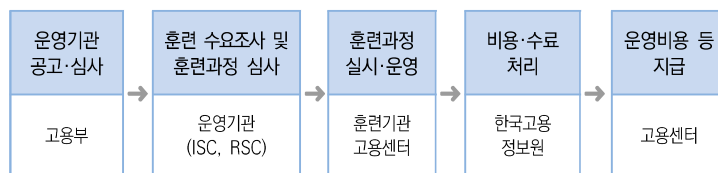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산업 및 육성이 필요한 산업에 대한 현장 기반 훈련을 수시 공급하여 재직자의 고용유지 또는 이·전직, 실업자의 취·창업 등을 지원

### ■ 사업내용

- (개요) 산업별·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RSC) 등을 중심으로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 기반 훈련과정을 선정하고 훈련비 등 우대 지원
-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
- (훈련과정) 산업별·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직 및 이·전직 과정
- (훈련비) 최초 1회에 한해 훈련비 전액지원
  - 재직자의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 사업추진체계



94 ▶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www.moe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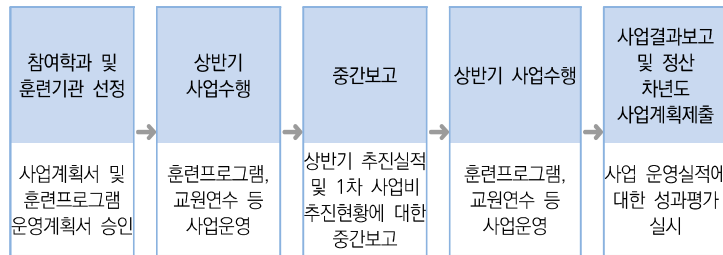
■ 사업목적

-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신산업 분야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교육부의 학과 재구조화 승인을 받은 학과 또는 신기술 훈련 지원이 필요한 직업계고 학과
- (지원내용) 신기술·신산업분야로 교과과정을 개편한 직업계고 학과 신입생을 재학 3년간 정규교육과정과 연계,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민간기관 훈련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1~3학년)으로 지원
  - \* 학과당 8천만원 내외, 연차별 신규 학년이 추가되는 경우, 연계 훈련기관의 훈련비와 운영비 추가 지원(1개 학년 당 훈련비 5천만원, 운영비 400만원 추가 지원)
  -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한 민간 훈련프로그램(연 100시간 이상) 지원
  - 디지털 기초지식 함양을 위해 디지털 훈련과정 의무 이수
  - 교사의 신기술분야 전문성 및 교수능력 함양을 위한 교원 연수 등
- (훈련방식) 1~3년차 단계적 지원
  - (1년차) 신기술 기초지식 및 실습 위주 훈련(디지털기초훈련 의무 편성)
  - (2년차) 신기술 전문지식 훈련 및 관심 제고(특강, 멘토링, 경진대회 등)
  - (3년차) 기업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운영,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취업 지원(산업계 수요 반영)

### ■ 사업 추진 절차



\* 전담 운영지원 기관을 통한 사업 모니터링 및 학과 간설텍 수시 진행

95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사업목적**

-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여 대·중소기업 상생기반의 직업훈련 생태계 조성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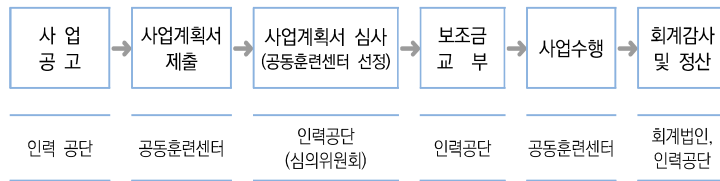
- (사업내용) 기업·사업주단체 등이 상대적으로 훈련기회가 적은 중소기업과 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제공 시 공동훈련센터에 훈련시설·장비비, 운영비 등을 지원
-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공동훈련센터에 연간 최대 20억원 범위에서 인프라 및 운영비 지원
  - 하이테크형의 경우 1년차 최대 8억, 2~5년차 최대 4억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연간 20억)	지원조건
시설·장비비	훈련에 소요되는 시설 증·개축 비용, 장비 구매 비용 등	연간 15억원	대응투자 20%
프로그램개발비	직무분석,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비용 등	연간 1억원	대응투자 없음
운영비	인건비 훈련수요 조사, 협약기업 관리 및 지원인력 인건비	연간 4억원	대응투자 20%
	일반운영비 훈련수요 조사비용, 홍보비,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운영비용 등		대응투자 없음
훈련비 및 훈련수당	- 사업주훈련 환급방식 - 전략분야 훈련과정운영비	수료인원에 따라 지급	훈련수당은 1개월(120시간) 이상의 채용예정자훈련 에 지원

- (유형) 컨소시엄 유형은 산업맞춤형, 하이테크형 등으로 구분

유형	주요내용
산업맞춤형	• 대기업과 협력업체(중소기업)가 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대기업(기업·사업주단체 등)의 훈련시설을 공동훈련센터 선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
하이테크형	• 디지털,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분야,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전통사업 등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등을 목적으로 해당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공동훈련센터(공공기관 등)를 지원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 대기업 등이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수한 훈련프로그램을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공유·개방토록 운영비 등 지원

### ■ 사업추진체계



96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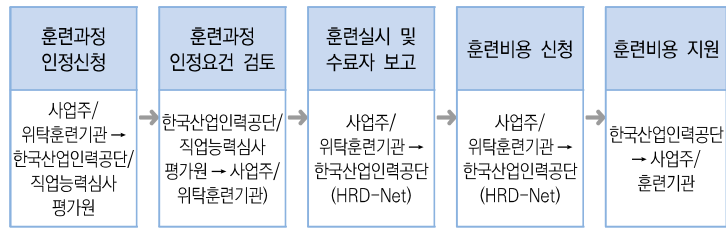
- 사업주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해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 지원내용

지원 내용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훈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시간 이상 훈련(집체, 인터넷원격)</li> <li>- 우편원격훈련은 2개월 32시간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지원 대상기업: 90~100%,</li> <li>•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60%(원격훈련 80%)</li> <li>• 1,000인 이상: 40%</li> <li>* 단 외국어 과정은 산정된 지원금의 50% 지원</li> </ul>
유급 휴가 훈련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li> <li>- 우선지원대상기업: 5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20일 이상 훈련</li> <li>- 대기업: 6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180시간 이상 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생 인건비: 소정 훈련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50% (대기업 100%)</li> </ul>
대체인력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인력인건비</li> <li>-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유급 휴가를 30일 이상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 고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액</li> </ul>
훈련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li> </ul>
숙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비 1일 3,300원 한도, 숙식비 1일 14,000원 한도(1개월 33만원 한도)</li> </ul>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훈련과정 접수: ① 자체훈련-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위탁훈련 및 원격훈련-직업능력심사평가원

## 97 ▶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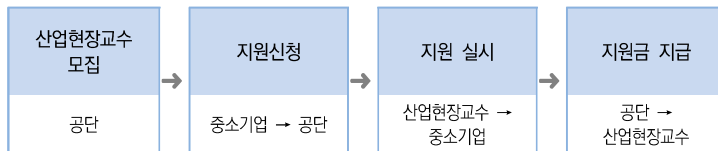
- 산업현장 경험과 전문기술을 보유한 숙련기술인을 산업현장교수로 위촉, 중소기업 대상 숙련기술전수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

### ■ 사업내용

구 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상시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사업장 * 품질관리 분야는 5인 이상 100인 이하 사업장	숙련기술전수 (애로기술 해결 등)

### ■ 사업추진체계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 98 ▶ 폴리텍 소규모사업장훈련

한국폴리텍대학(☎032-650-6780),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www.kopo.ac.kr),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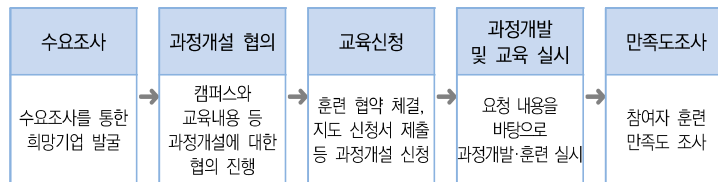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훈련기관이 없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훈련'을 실시하여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

### ■ 사업내용

- 운영기관: 한국폴리텍대학
- 훈련대상: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 훈련시간: 최대 60시간
- 훈련형태: 이동현장훈련, 대학집체훈련 등
- 훈련장소: 기업 내 훈련시설, 임차 훈련시설 등
- 훈련인원: 4,400명('25년 기준)

### ■ 사업추진체계



99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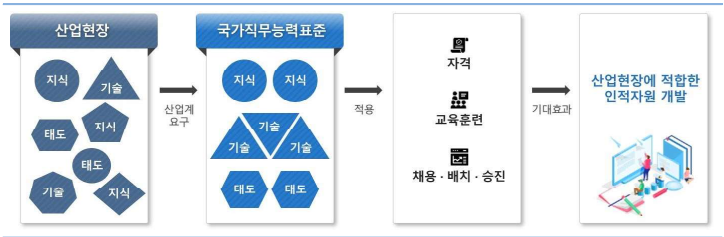
한국산업인력공단 직무능력표준국(☎ 1644-8000), NCS 공식 홈페이지(www.ncs.go.kr)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지식·기술·태도)을 표준화한 것

사업개요

- '13년부터 고용노동부 총괄, 산업계 주도로 본격적으로 개발, 24대 분야 1,100개 NCS(세분류), 13,343개 능력단위 개발·고시('24.12.04.)
- \*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여 학벌·스펙 위주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NCS 개발 추진

< NCS 개념도 >



01. 사업관리	02. 경영·회계·사무	03. 금융·보험	04. 교육·자연·사회과학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06. 보건·의료	07. 사회복지·종교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09. 운전·운송	10. 영업판매	11. 경비·청소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13. 음식서비스	14. 건설	15. 기계	16. 재료
17. 화학·바이오	18. 섬유·의복	19. 전기·전자	20. 정보통신
21. 식품가공	22. 인쇄·목재·가구·공예	23. 환경·에너지·안전	24. 농림어업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예시

- 각 NCS에서는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을 제시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 ‘클라우드 보안 관리·운영’ NCS의 내용(예시) 〉

직무 (NCS)	능력 (능력단위 위)	세부능력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 일부 내용만 발췌
클라우드 보안 관리·운영	클라우드 컴플라이언스 준수	클라우드 관련 법률 검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외 법령, 정책 분석을 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li> <li>•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법규의 준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li> </ul>
		클라우드 보안 인증 관리하기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li> <li>• 클라우드 서비스 표준계약서(B2B, B2C)</li> </ul>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법령, 규정, 정책 해석 능력</li> <li>• 클라우드 서비스 표준계약서 작성 기술</li> </ul>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 목표의 정확성을 기하려는 노력</li> <li>•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려는 의지</li> </ul>
		클라우드 보안성 검토 수행하기 ∴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보안		

⇒ (인력공급)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를 현장(일)에 맞게 개편하고, (인력수요) 기업의 능력 중심 채용 및 인사관리에 준거로 활용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축 추진현황

- 기술 발전에 따른 직무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양성하기 위해 매년 산업계 주도로 NCS 개발·개선 추진

\* ('24년) SW 공급망 보안, 데이터거래관리, 의약품 임상시험 등 미래유망분야 포함 7개 개발, 보안사고분석대응, 스마트설비설계 등 산업현장 수요 반영하여 105개 개선

100 ▶ **산업별역량체계(Sectoral Qualifications Framework)**

한국산업인력공단 직무능력표준국(☎ 1644-8000), NCS 공식 홈페이지(www.ncs.go.kr)

◇ SQF(Sectoral Qualifications Framework)는 산업분야에서 통용되는 직무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능력중심사회와 직무중심 인사 관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로 활용

■ **사업목적**

- 학력 중심의 인력양성 체계를 탈피, 교육훈련·자격·경력 등 다양한 개인의 역량이 산업현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인정기준 마련 필요
-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에서는 국가역량체계(KQF) 구축 추진('13년~)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산업별역량체계 구축 추진\*  
\* 산업분야별 사례를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구축된 SQF를 통해 KQF를 완성해 나가는 방법 선택(국가역량체계 구축 기본계획, 2013)

■ **사업개념**

- SQF(Sectoral Qualifications Framework)는 산업 현장에서 통용되는 직무를 도출하여 표준화하고<sup>(직무면)</sup>,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구조화하여<sup>(직무역량체계)</sup>, 교육-훈련-자격-경력을 연계하여 활용하는<sup>(역량인정방안)</sup> 체계

사업 단계	산업별 직무분석 및 구조화		직무역량체계 활용	
	[1단계] 직무맵 구축	[2단계] 직무역량체계 개발	[3단계] 역량인정방안 마련 및 등록	
개념도	8	8	8	
	7	7	7	
	6	6	6	
	5	5	5	
	4	4	4	
	3	3	3	
	2	2	2	
	1	1	1	
	수준	직무	수준	수준
	위위	위위	위위	위위
산업분야	산업분야	산업분야	산업분야	
산업분야	산업분야	산업분야	산업분야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 산업별역량체계(SQF) 구축 추진현황

- (직무역량체계 개발) 정보기술분야 SQF 구축 기초연구 및 시범 개발('13~'15년)을 시작으로, '24년까지 ISC 주도로 37개 산업분야 개발

#### 〈 연도별 직무역량체계 개발 현황 〉

연도	산업분야			
2015~2022 (16개)	소프트웨어	경영관리	직업상담서비스	전시·컨벤션
	카지노	용접	금형	표면처리
	바이오	정밀화학	석유화학	플라스틱·고무
	의약품	전기공사	의료기기	물
2023 (11개)	공급망관리	심리상담·지도	여행	숙박
	식품가공	선박생산	금속가공	세라믹
	전자기기	통신기술	자원순환	
2024 (10개)	가상융합	디자인	건축	기계생산
	전기설계·감리	에너지관리	반도체	방송
	자동차정비	산업안전관리		

- (역량인정방안 마련) 개발된 18개 산업분야 직무역량체계의 수준별 직무역량과 교육, 자격, 훈련 등을 연계

#### 〈 연도별 역량인정방안 마련 현황 〉

연도	산업분야			
2023 (5개)	소프트웨어	직업상담서비스	카지노	용접
	바이오			
2024 (13개)	공급망관리	심리상담·지도	여행	숙박
	식품가공	선박생산	금속가공	세라믹
	의약품	전기공사	전자기기	통신기술
	자원순환			

## 101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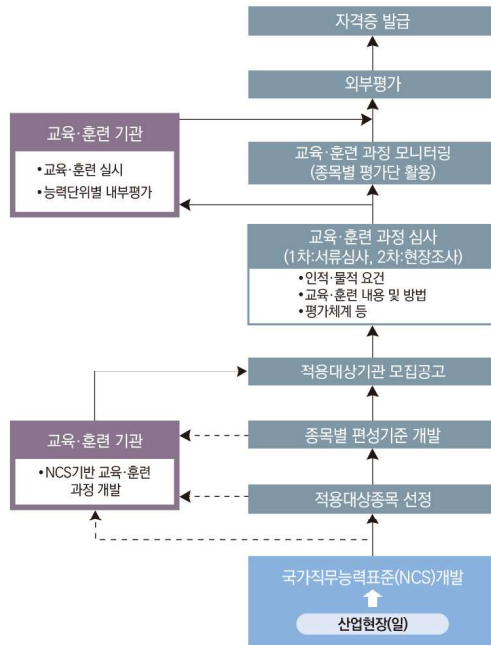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CQ-Net 홈페이지(<https://c.q-net.or.kr>)

### ■ 개념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 출석률 75% 이상인면서 내부평가(훈련기관) 및 외부평가(한국산업인력공단) 결과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

### ■ 추진절차



### ■ 사업추진체계

주요절차	세 부 내 용	비고
① 대상종목 선정	• 매년 다음연도 추가시행 대상종목 선정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회
↓		
② 종목별 교육·훈련과정 편성기준 마련	• 선정된 자격종목별 NCS 능력단위 기반 교육·훈련 과정 내용(필수/선택 능력단위 및 최소 교육시간), 평가방법, 시험문제 원형 개발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		
③ 과정평가형자격지원 단 구성·운영	• 적용대상 종목별 평가를 위한 전문가 인력풀 확보 (NCS 개발 전문가, 시험위원, ISC 추천 전문가 등)	인력공단
↓		
④ 시행계획 수립	•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 교육·훈련과정 수, 평가의 난이도, 평가일정 등 공고	고용노동부
↓		
⑤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 편성	• NCS를 기반으로 교육·훈련과정 편성	교육·훈련기관
↓		
⑥ 교육·훈련기관(과정) 선정 심사 및 과정 지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기관 선정 - (심사기준) 필수기준 3항목, 세부기준 6영역 16항목 -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상기관 확정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		
⑦ 외부평가 문제출제	• NCS 능력단위 중심의 산업계 주도 외부평가 시험 문제 출제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		
⑧ 교육·훈련 실시 및 내부평가	• NCS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교육·훈련 및 내부평가 실시 - (이수기준) 75%이상 출석, 내부평가 60점이상	교육·훈련기관
↓		
⑨ 교육·훈련과정 운영 모니터링	• NCS 기반 교육·훈련 실시여부 확인(분기 1회 이상) - 지정받은 내용으로 교육·훈련 실시여부 확인 - 내부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 등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		
⑩ 외부평가	• 내부평가 이수자를 대상으로 외부평가 실시 - 지원단에서 문제출제, 필수능력단위 중심의 평가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		
⑪ 합격자 결정 및 자격증 발급	• 내부 및 외부평가 결과를 1:1의 비율로 합산하여 80점 이상인 교육·훈련생을 합격자로 결정 • 자격증에 교육·훈련을 받은 NCS 능력단위 등 명시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 102 ▶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CQ-Net 홈페이지(<https://c.q-net.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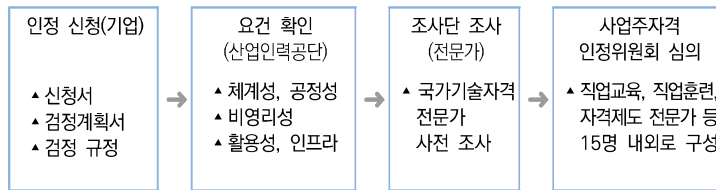
### ■ 개념

-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일정한 기준으로 소속 근로자 또는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자격

### ■ 정부인정 혜택

- (인정서 발급) 정부 인정서 발급, 정부인정 마크(BI) 사용 권한 부여
- (현판 증정) 사업주 자격 인정기업임을 인정하는 현판 증정
- (전산 관리)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정보 시스템에 정부 인정 사업주자격으로 등재 관리
- (직무능력은행제) 인정 사업주자격 취득자 정보를 직무능력은행제에 저축 관리 가능하도록 지원
- (교육 지원) 사업 담당자 대상 운영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우수사례 포상) 참여기업 중 모범이 되는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 및 확산

### ■ 사업추진체계



## 103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644-5113)

관련 홈페이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www.ksqa.or.kr), 고용24(www.work24.go.kr)

### ■ 사업목적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에 부합하는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선정을 위해 기관 건전성, 훈련운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 훈련기관의 건전성과 역량을 평가하여 정부지원훈련에 대한 참여자격 부여
  - \*\* 실업자·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에 적합한 훈련과정 선정

### ■ 심사평가 신청대상 구분

- 기관평가: 집체훈련기관\*, 원격훈련기관\*\*
  - \* 집체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일반계좌제훈련, 일반고 특화 훈련, 과정평가형 자격훈련), 사업주 위탁훈련
  - \*\* '25년부터 원격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 사업주 위탁훈련)의 기관평가 및 과정심사는 별도 심사계획 공고
- 과정심사: 집체훈련과정\*
  - \*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일반계좌제훈련), 사업주 위탁훈련
  - \*\*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평가형 자격 훈련은 별도 심사계획 공고

### ■ 심사평가 요소

- 기관평가: 기관건전성(준법성(행정처분), 재정건전성) 및 훈련역량\*
  - \* 훈련성과(취업률, 수요자 만족도, 이수자평가 등), 현장평가(인프라, 과정 개발 등)
- 과정심사: 기본요건, 과정적정성(훈련내용, 교·강사, 시설·장비 등), 성과적정성\* 및 산업·지역별 인력수요 적정성\*\*
  - \* 실업자 일반계좌제훈련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 심사평가 결과 및 활용

- 기관평가: 훈련기관마다 3년인증\* 또는 인증유예 등급부여 및 고용24 (www.work24.go.kr) 공개  
\* 신규기관은 1년인증, 우수훈련기관은 3년인증 외 2년 추가 부여
- 과정심사: 훈련과정 선정 제외(인증유예 등급 훈련기관 포함)

### ■ 추진일정

- 202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공고('24.12월) → 훈련기관 설명회('25.3월) → 신청·접수(4월) → 기관평가, 과정심사(~9월) → 결과 통보 (10월) → 이의신청 심의·확정(11월말)

## 104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 사업목적

-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 함),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자
  -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 원격훈련의 경우 쌍방소통이 가능한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함
- (소득요건) 가구원합산 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KDT), 중장년 내일센터 참여자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월 최대 200만원(1인당 1,000만원\*) 한도, 연리 1%(신용보증료 별도), 최대3년 거치 최대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월 최대 200만원(1인당 2,000만원) 한도
  - \*\*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 ■ 사업추진체계



## 105 ▶ 숙련기술 장려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숙련기술장려를 위한 지원

####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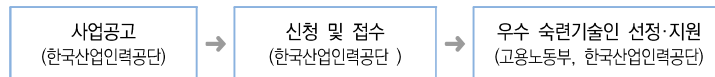
- 숙련기술장려 활성화로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우수 숙련기술인이 존중받는 능력위주 사회 풍토를 조성

#### ■ 사업내용

-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 숙련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숙련기술인에게는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대한민국명장 등 선정 및 홍보

구 분	인원 (년)	선정대상	지원내용
대한민국 명장	30명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li> <li>•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숙련기술 발전 등에 기여한 사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장려금 20백만원</li> <li>• 계속종사장려금 지급</li> <li>• 증서 및 명장패 등 수여</li> <li>•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1명 이상 선정된 중소기업)</li> </ul>
우수 숙련기술자	100명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생산업무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li> <li>•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장려금 2백만원</li> <li>• 증서 수여</li> <li>•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2명 이상 선정된 중소기업)</li> </ul>
숙련기술 전수자	10명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하려는 사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련기술전수지원금 지급</li> <li>• 증서, 휘장, 현판 수여</li> <li>• 기능대학 교원 자격 부여</li> </ul>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20개 업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련기술 장려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직무재설계, 인사제도 개선, 학습조직 구축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판 수여</li> <li>•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li> </ul>
이달의 가능한국인	1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계고 등 졸업 후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CEO로서 숙련기술 향상에 기여한 사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서, 휘장, 흉상패, 현판 등 수여</li> </ul>

### ■ 사업추진체계



### ■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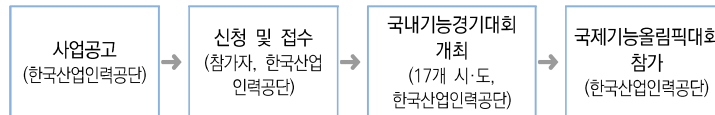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기능경기대회 저변 확대를 통해 숙련기술 우대풍토 조성 및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

#### ■ 사업내용

- 국내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 등을 통해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 및 숙련기술 향상 도모

### ■ 사업추진체계



\*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출전,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최고득점자를 2년에 걸쳐 선발하여 출전

## 106 ▶ 직무능력은행제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6), 직무능력은행 홈페이지(<https://bank.ncs.go.kr>)

### ■ 사업목적

- 교육·훈련·자격·경력 등을 통해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 관리하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직무능력은행제)'를 구축하여 취업·인사배치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 사업내용

#### 직무능력은행 구축 ('23. 하반기 서비스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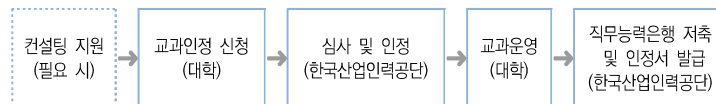
- 직업훈련(HRD-Net)·자격 정보시스템(Q-Net, CQ-Net), 폴리텍 통합학사 시스템 등을 연계한 직무능력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 ⇨ '23.9.1부터 대국민 서비스 개시
  - (서비스) 개인이 취득한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할 수 있도록 개인별 계좌 발급, 저축된 개인 직무능력정보를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 인정서' 발급
    - \* (개인) 인정서를 발급받아 취업 시 저축된 자신의 직무능력정보를 손쉽게 제시
    - \* (기업) 구직자·근로자의 직무능력정보를 확인하여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
    - \* (고용서비스) 잡게어와 연계하여 맞춤형 취업지원 및 훈련추천 등 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
  - (고도화) 고용보험DB, 개인 사업자등록정보, 평생학습계좌제 등 연계 ('24.3월), 고교 NCS 기반 전문교과 이수내역(NEIS, '24.6월) 연계 등 정보연계 확대
  - (고용24) 고용24에서도 직무능력계좌 및 인정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연계('24.12월)
- 공인 민간자격, 사업주자격, 청년 해외 일경험교육연수 이력 등 정보연계 확대 추진 예정('25년)

〈 직무능력은행 연계 정보 현황 〉

구분	정보시스템	소관 기관	연계 정보	연계 시기
자격	Q-NET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검정형)	'23.9월
	수탁기관 內 정보시스템(8종)	8개 수탁기관		
	CQ-NET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과정평가형)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자격	
	국방인사정보체계	국방부	국방자격	
-	사업주자격 운영기관	사업주자격	'25 예정	
교육	-	교과인정 참여 대학	NCS기반 대학 교과인정 과목	'23.9월
	학사정보시스템	한국폴리텍대학	폴리텍대학 교육정보	'24.3월
	평생학습계좌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	
	NE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고교생 NCS 기반 전문교과	
	월드잡+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 해외 교육연수 이력	
훈련	HRD-NET	한국고용정보원	직업훈련 정보	'23.9월
	학사정보시스템	한국폴리텍대학	폴리텍대학 훈련정보	
경력	고용보험시스템	근로복지공단	상용·일용 근로자 고용보험 이력	'24.3월
	국세정보시스템	국세청	개인 사업자등록정보	
	국방인사정보체계	국방부	군 경력정보(군간부)	
	월드잡+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 해외 일경험 정보	'25 예정

NCS기반 대학 교과인정 및 컨설팅

- (교과인정) NCS 형식으로 설계되지 않은 전문대학 등의 교육과정을 심사하여 직무능력은행에 저축 가능한 과정으로 인정
- (컨설팅) NCS기반 교과인정과 직무능력은행제 참여 지원을 위해 전문대학 등을 대상으로 NCS 기반 교과 컨설팅 제공
- 추진체계



## 107 ▶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0), Q-Net 홈페이지(<https://www.q-net.or.kr>)

### ■ 사업목적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주요 응시목적\*은 취업, 자기개발, 업무수행능력 향상 등이며,
  - \* (청년응시자 응시목적) 취업 49.9%, 자기개발 21.5%, 업무수행능력 향상 8.7%, 이직(전직) 3.9%, 창업 3.3%, 학위취득 3.1%, 자격수당 3.0%, 승진 2.1%(’22년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설문조사 통계)
- 자격취득자의 취업률\*은 미취득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자격취득은 취업뿐만 아니라 직무능력 향상, 승진, 임금 인상 및 더 좋은 일자리로의 이직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
  - \* (취업률) 자격취득자 59.1%, 미취득자 46.1%(’21년 국가기술자격 효용성 평가결과 참조)

### ■ 사업내용

-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소득 및 취업 여부 무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25년 기준 488종목)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선 지원(’25년 242억)
  - 1인당 총 3회 지원으로 제한하고, 지원금 소진 시까지 한정

### ■ 지원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홈페이지(<https://www.q-net.or.kr>)에서 원서 접수 시 할인된 응시료로 결제



---

2025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 상생의 노사협력 지원

---

통

## 108 ▶ 근로시간 면제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도입배경

-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사용자가 전적으로 지급해 온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
- '97년 노조법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도입한 이후 3차례에 걸쳐 13년간 유예하면서 노사자율로 전임자를 축소토록 하였으나 오히려 전임자 수가 계속 증가
- 반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시행 시 중소기업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 이에 따라 노·사 공동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면서 불합리한 노조전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09.12.4. 노사정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
- 이후 '21년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하고,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근로시간 면제자로'로 규율

### 주요내용

- 기본적으로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활동(협의·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업무)에 대해 유급 인정
- 노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함

## ■ 근로시간면제 한도

### ● 조합원 규모별

조합원 규모*	연간 시간 한도	사용가능인원
99명 이하	최대 2,000시간 이내	•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100명~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200명~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300명~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500명~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1,000명~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000명~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5,000명~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10,000명~14,999명	최대 28,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최대 36,000시간 이내	

\*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 지역분포별

대 상	추가 부여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광역자치단체 개수	시 간
전체 조합원	2~5개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10%
1,0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6~9개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20%
	10개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30%

\* 광역자치단체 개수 산정기준

①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② 광역자치단체의 개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5% 이상이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109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 복수노조 설립 허용

- '11.7.1.부터 기업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됨으로써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은 물론, 기업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음

### ■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야 함
  - \*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개별교섭 가능

###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조법 및 동 시행령 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함
  - ①(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명칭,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교섭요구
  - ②(교섭요구사실 공고)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
  - ③(다른 노동조합의 참여)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 ④(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사용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5일간 공고
  - ⑤(자율적 단일화)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날(확정공고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노동조합 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음(해당 기간 내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개별교섭 가능)

- (⑥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자율적 단일화 또는 개별교섭 동의를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은 자율적 단일화 기한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 등을 통지
  -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총사근로자에 한정)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 (⑦과반수 노동조합 확정)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
  - 공고기간 중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공고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 공고기간 중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여 노동위원회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 (⑧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 공동교섭대표단 구성(노사자율 → 안될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
  -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는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조만 참여

### 공정대표의무제도

-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교섭단위 분리·통합 제도

- 교섭창구 단일화 기본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동일한 사업장내 교섭단위 분리·통합\* 가능
  - \* 분리된 교섭단위 통합('21.7.6. 개정 노조법 시행)

## 110 ▶ 노동쟁의 조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 개요

- 노동쟁의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당사자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

### ■ 조정

-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가 조정위원이 되어 노사 당사자 간의 타협이 이루어 지도록 설득하고, 필요 시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속한 타결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노사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 개시 → 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노사가 수용할 시 조정 성립 및 노동쟁의 종결, 조정 불성립 시 정당한 파업 가능
  - \*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 조정기간은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 공무원노동관계조정은 30일 이내이며,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각 10일, 15일 이내,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교원노동관계조정은 30일 이내이며 연장불가

### ■ 중재

- 조정과 달리 관계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상 효력이 있는 처분
-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①노사 쌍방이 함께 중재 신청 또는 ②일방이 단체 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개시
  -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 할 수 없음
- 교원 노동관계는 ①노사 쌍방이 함께 중재 신청, ②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③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개시

-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회부를 결정한 경우 당해 사건은 중재에 회부\*

\* 노동위원회가 내린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함

### ■ 긴급조정

-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여 통상의 조정제도만으로 그 해결이 부적절한 경우 행하여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71조제1항)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함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 긴급조정 결정 공표·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당사자에게 통고(고용노동부장관) → 노동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 재개 불가) → 긴급조정에 의한 조정안 수락 및 중재 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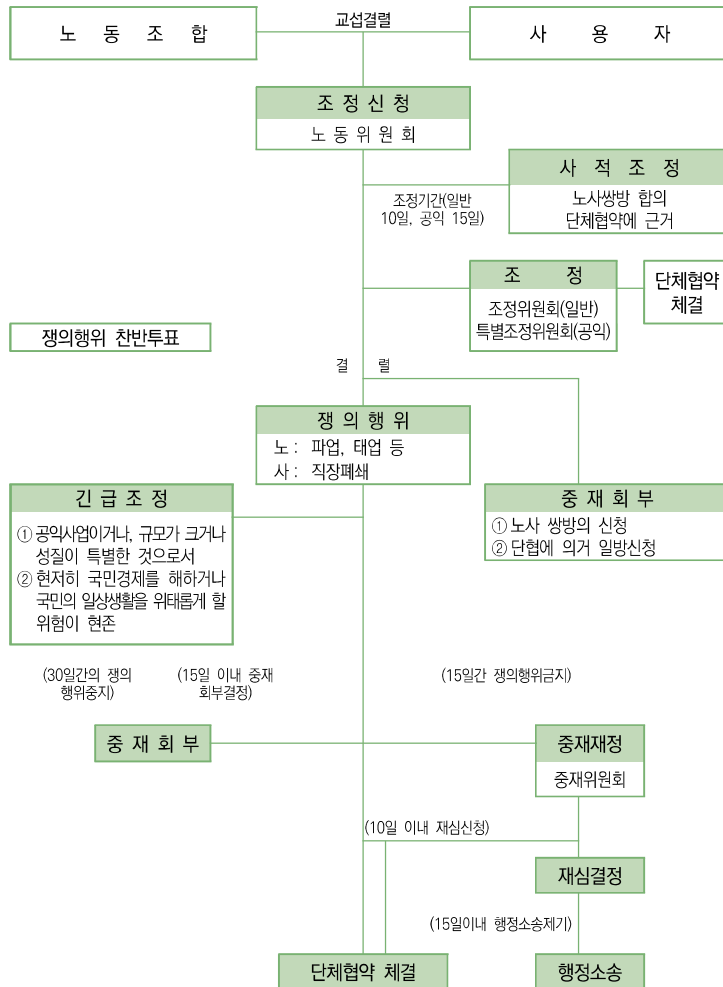
### ■ 사적 조정·중재

- 노사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거나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로부터도 사적 조정 또는 중재를 받을 수 있음

\* 사적 조정 시에도 공적 조정의 조정전치기간, 중재 시 쟁의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며, 사적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공적 조정과 같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

- 노사 당사자는 사적 조정 또는 중재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 신청 가능

### 노동쟁의 조정 절차



## 111 ▶ 노사협의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 목 적

- 열린 경영을 통해 노사간 비전과 목표를 공유, 신뢰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일터혁신을 위한 과제제안 및 실천방안 등을 강구함으로써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근 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 설치대상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 구 성

- 동수의 근로자·사용자 위원(각 3명 이상 10명 이내)  
 〈근로자위원 구성〉
  - ▶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대표자와 그 노조가 위촉하는 자
  - ▶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

### ■ 운 영

- 매 3개월마다 정기회의 개최(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 노·사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 ■ 임 무

- 협의 사항: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등 17개 사항
- 의결 사항: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 5개 사항
- 보고 사항: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등 4개 사항

## 112 ▶ 부당노동행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 부당노동행위란?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처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 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조정법(이하 ‘법’)」 제81조제1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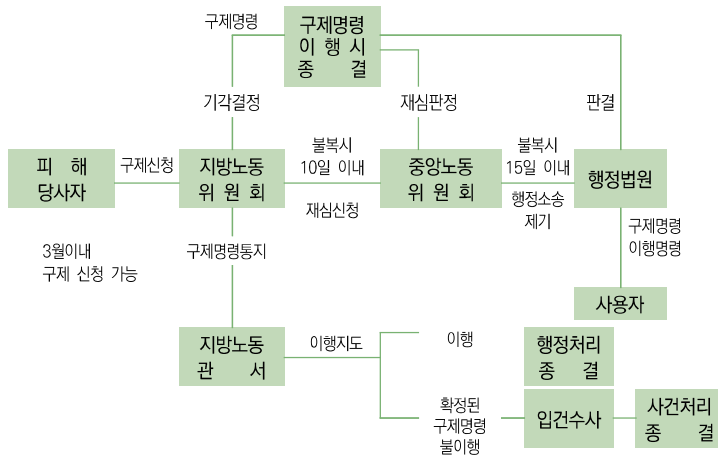
### ■ 부당노동행위 사례(예시)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처급을 하는 경우
-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등 행정관청에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증거를 제출한 것 등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처급을 하는 경우
- 특정 노동조합 가입·탈퇴를 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
-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조설립을 부추기거나 유도하거나 반대로 노조설립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입·방해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경우  
\* 다만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
-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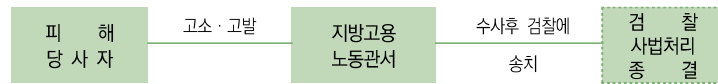
### 구제절차

- 행정절차에 의한 구제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법 제82조제1항)
  - 다만,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함(법 제82조제2항)

〈 구제신청절차 〉



-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
  -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발) 등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90조)
  - 부당노동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병행할 수도 있음



## 113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

### ■ 개요

-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한 때에 원직복직 등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

### ■ 구제신청 방법

-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 \* 제척기간으로 동 기간 도과 시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신청권 소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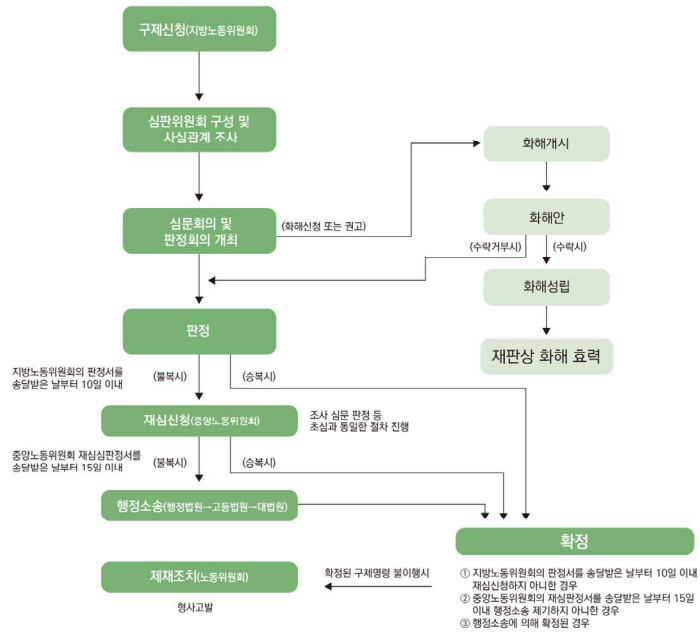
### ■ 처리절차

- 지방노동위원회는 사건접수 후 당사자의 이유서, 답변서 제출을 비롯한 사건 조사를 거쳐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당사자 신청이나 추가 조사기간이 필요한 경우 등 연장 가능)하고,
  - 심문회의 개최 후 최종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 송부
  - 다만, 당사자 간 '화해'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 작성으로 사건 종료(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제도

-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등\*을 신청한 경우 권리구제업무 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을 무료로 선임해주는 제도(근로자만 신청 가능)
  - \* 노동위원회 소관사무(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제1호) 중 판정·결정·승인·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
- 지원 내용: 이유서·답변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합의 등 구제 신청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일체의 법률 서비스

참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처리절차 흐름도



## 114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및 상생협력 지원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044-202-7604, 760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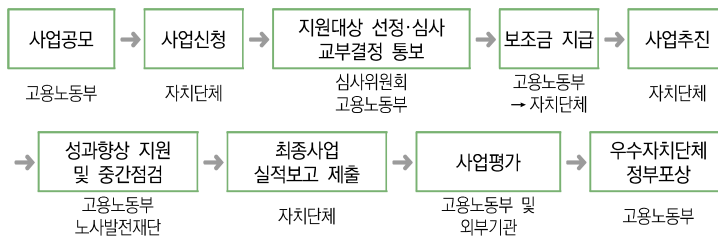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자치단체
  -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근거 자치단체가 지역의 노사 및 주민대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과 협력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고용·인적자원개발, 노사관계 안정 등 지역 고용·노동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발굴하고 협의·심의하는 회의체
- (지원내용)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가 국정과제 의제, 광역-기초 공동의제, 지역특성 반영 의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지원\*
  - \* (예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 지원, 산업재해 예방, 광역-기초 연계사업, 지역 특성 반영 사업 등
  - \*\* 광역자치단체는 최대 80백만원, 기초자치단체는 최대 40백만원 한도 지원(재정자주도 고려 광역은 45~55%, 기초 최대 15~25% 지방비 매칭 조건 지원)
- 지역노사민정 관련 담당자(자치단체, 지방관서 등) 대상 역량강화 교육 및 지역노사민정활성화 컨설팅(자치단체 대상) 실시

### ■ 사업추진체계



## 115 ▶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大賞) 선정 지원

고용노동부(☎ 044-202-7598), 노사발전재단(☎ 02-6021-106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 사업목적

-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에 확산하여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

### 신청방법

구분	노사문화 우수기업	노사문화 대상(大賞)
신청기간	2025년 상반기 중	2025년 하반기 중
접 수 처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에서	신청기간 내 접수
선정공고	6월말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공고)	11월중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공고)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li> <li>▶ 단, 사업장 단위 신청은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li> <li>▶ 국내에 모기업이 있는 해외 현지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li> </ul>
제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li> <li>▶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명단공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li> <li>▶ 노사문화 우수기업·大賞 선정 후 2년 미경과 사업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li> <li>▶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명단공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li> <li>▶ 노사문화 대상 선정 후 2년 미경과 사업장</li> </ul>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li> <li>▶ 우수노사문화 추진실적(한글파일 제출), 증빙자료(한글파일 또는 PDF 제출)</li> <li>▶ 납세증명서(국세청 발급 후 스캔본 제출)</li> </ul>	

- 반드시 노·사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
- 복수노조 사업장은 가급적 전체노조 참여하에 공동명의로 신청
- 중소기업 · 대기업 · 공공기관을 구분해 신청

### ■ 선정절차



### ■ 선정기업 지원내용

- 유효기간: 우수기업·대상(大賞)기업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 지원내용

지 원 내 용	노사문화 대 상	노사문화 우수기업	담당기관
〈 행정상 우대 〉			
■ 정부포상	대통령·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장관상	인증서·인증패	고용노동부
■ 정기근로감독	면 제 (최장 5년)	면 제 (최장 5년)	
■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가점	2.5점 가점	2.5점 가점	
■ 상품용기 등에 우수기업 표식	우수기업 표식	우수기업 표식	
■ 소개책자 제작 및 유관기관 비치	제작·송부	제작·송부	
■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우대	0.5점 가점	0.5점 가점	국 방 부
■ 계약 적격심사시 우대	0.1점 가점	0.1점 가점	방위사업청
■ 세무조사 유예 (모범납세자에 한함)	1년(2년: 국무총리상 이상)		국 세 청 (납세자보호 담당관)
■ 납세담보 제공 면제 (모범납세자에 한함)	2년(3년: 국무총리상 이상)		
■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	2점 가점	2점 가점	중소기업 벤처부 (인력정책과)
■ 현역인원배정시 우대	2점 가점	2점 가점	
■ 클린사업 인증시 우대	최우선 선정	2점 가점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	5점 가점		
〈 금융상 우대 〉			
■ 대출금리	0.1% 우 대	0.1% 우 대	농협
■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우 대	우 대	신한, 하나, 국민
■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 대	우 대	신용보증기금

※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위 내용 중 일부내용이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116 ▶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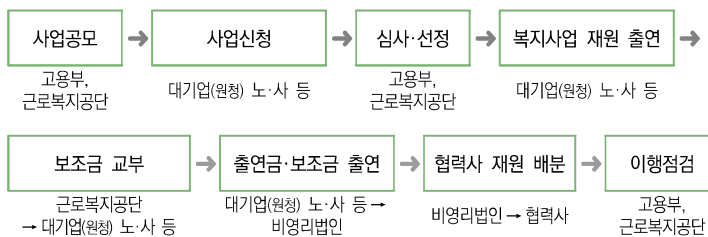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협력사 근로복지 개선을 위한 대기업 노·사의 자율적인 자원 형성을 촉진하여 대기업과 협력사 간 노·사 및 노·노 연대 의식을 강화하고 상생 분위기 조성

### ■ 사업내용

- 대기업(원청) 또는 대기업(원청)의 근로자들이 2·3차 협력사 등의 근로복지 개선 사업을 위한 자원 출연 시 출연금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
  - \* 사업주 출연분의 최대 100%, 근로자 출연분의 최대 200% 지원
- 협력사 근로복지 개선사업 예시
  - ① 복지시설 구입·설치·리모델링·운영 지원
  - ②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 장학금, 입학금 지원
  - ③ 근로자의 체육 및 문화 활동 지원
  - ④ 근로자의 의료비, 건강진단비, 자녀 보육료 등 지원
  - ⑤ 근로자에게 기념품, 선물, 위로금 등 지급

### ■ 사업추진체계



## 117 ▶ 근로자 이음센터

노사발전재단(☎ 02-6021-1065),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kwpi.or.kr)

### ■ 사업 개요

- 노동약자 등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한 전용공간으로, 노동권의 상담, 고용노동서비스 연계, 현장소통·의견수렴 등 기능 수행

### ■ 사업 내용

- (상담) 전국10개소 이음센터에 공인노무사가 상주, 무료 노동 상담서비스 제공
  - \* 서울(금천구), 부산(사하구), 대구(서구), 평택(중앙동), 광주(북구), 청주(흥덕구) + 연내 4개소 추가 확충 예정
  - (노동법 상담) 공인노무사가 근로자의 고충, 분쟁 등에 대한 노동법 전문 상담 및 근로자 대상 기초 노동법 교육 제공
  - (찾아가는 상담) 센터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 (온라인 상담) 카카오톡 채널(노동SOS)을 통한 공인노무사의 온라인 상담
- (분쟁예방 지원) 노무제공자 분쟁예방 지원단 운영으로 노무제공자들의 분쟁 상담 및 자율적 분쟁 해결 지원
- (고용·노동서비스 연계) 상담 결과에 따라 필요한 고용·노동서비스 연계
  - \* 노동법 위반 진정(고소) 접수를 희망 → (지)청 권리구제지원팀으로 안내 및 신고 접수 지원
  -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 고용센터·일자리센터 연계
  - 근로자 직업병 및 직장 내 트라우마 → 근로자 건강센터 및 직업트라우마센터 연결 지원
- (소통) 근로자 간 연대 공간, 정부와의 소통
  - 자율적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소모임 공간 및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 \* <sup>1)</sup>노무제공자 법률·세무상담 교육, <sup>2)</sup>지역·직종 등을 고려한 일반근로자 노동법 특강, <sup>3)</sup>심리상담·건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온라인(네이버블로그, 카카오톡)·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정책 의견 수렴

## 118 ▶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044-202-7637, 763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 사업목적

-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 (지원기간) 보조금 교부결정시 ~ '25. 12.까지
- (지원내용) 영세소규모사업장근로자, 예비근로자, 특고 등 노동약자 대상 ①교육, ②상담 및 법률구조, ③인식개선 사업

### ■ 사업추진체계

